

시 민

주무관	보도환경개선과장	보도블록혁신단장	도시안전실장	행정2부시장
주인선	최동필	정유승	조성일	12/01 이건기
협 조	시설안전정책관 교통운영과장 도로관리과장 보도환경팀장			한제현 강진동 이택근 권순구

문서번호	보도환경개선과-16325
결재일자	2014. 12. 1.
공개여부	비공개
방침번호	행정2부시장 방침 제368호



- 인도10계명 추진관련 -

보도상 지주형 가로시설물(신호등)

2014. 11

도시안전실
(보도환경개선과)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<p>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 ● 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<p>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예시 :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빗물순환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■ 바른 우리말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권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<p>타 자 원 의 활 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<p>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도로관리과, 교통운영과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<p>언 론 홍 보 계 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계 획 :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자설명회 ■ 현장설명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고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

보도상 자주형 가로시설물 (신호등, 가로등) 통합관리계획

가로변에 기능별로 설치하여 난립하던 자주형 가로시설물을 신호등, 가로등 중심으로 통합 정비하고, 각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관을 명확히 정하는 등 통합시설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

I 추진개요

추진 배경

- 걷기 편한 인도 조성을 위한 『인도 10계명』 마련 추진(13.12.28. 시장 요청)
- 『인도 10계명』 추진 계획(14. 4. 24. 시장방침 제125호)
 - 9개 주요 해결과제 중 고밀도 다기능 표지판 관련

추진 경과

- 4. 8 : 주요해결과제 실무 TF
 - 통합지주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
- 4. 16 : 고밀도 다기능 표지판 TF
 - 실태 파악 후 정비 우선 순위에 따른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
- 4. 30 : 보도환경개선 TF(5차) 회의
 - 교통신호등 주변시설물은 교통운영과에서 설치 및 관리기준 수립
 - 통합지주 관리기준 명확화를 위해 조례 개정 필요
- 6. 20 : 교통신호등 주변 통합지주 관련 회의
 - 통합형 지주설치 주관부서 지정 및 통합지주 관리기준 조례명시 필요
- 7. 8 : 관련 부서 실무 TF
 - 가로등 분전함 및 사설안내간판 통합 방안 협의
- 8. 29 : 관련 부서 실무 TF(2차)
 - 통합형 지주 유지관리부서 확정 및 관리기준 조례반영대상 논의
- 10.7 : 통합지주 설치추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(교통운영과, 도시교통본부장 방침)

II 시설물 현황

□ 지주형 가로시설물 종류

(단위: 개수)

총계	교통안전시설(지주 수)				가로등 주	가로등 분전함	사설안내표지
	계	신호등	안전표지	CCTV			
143,974	8,560	8,017	415	128	122,080(본)	6,840	6,494

연번	지주형 가로시설물	현황사진	관리부서
1	신호등		교통운영과
2	교통안전표지		교통운영과
3	CCTV		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센터, 구청
4	가로등		도로관리과
5	가로등분전함		도로관리과
6	사설안내표지판		보도환경개선과

Ⅲ

문제점

- 무분별한 독립지주 설치 및 관리소홀로 시민 보행 방해
 - 광범위한 허가대상과 저렴한 점용료로 무절제하게 설치
 - 설치 및 철거등 관리 소홀로 보행공간 방해 및 도시미관 저해
- 통합형 지주 설치 주관부서의 부재
 - 통합지주 설치시 예산반영 및 시공부서 부재 등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
- 시설물별 관리부서가 달라 효율적인 업무추진 어려움
 - 관리기준 미비로 파손 및 사고발생시 관리기관간에 책임소재 불명확하여 관리책임 미루고 응급조치 지연

Ⅳ

개선방향

- 신규설치시 설치대상을 최소화하고 통합설치를 유도
 - 법규상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불필요시설 허가 제한
- 통합형 지주 주관부서에서 관리체계 일원화
 - 교통신호등, 가로등 분전함 등 통합가능 지주과약 후 주관부서에서 통합추진
-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지주 관리부서 지정 명확화
 - 「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중 [별표]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통합지주 관리부서 명시

Ⅴ

추진계획

① 통합지주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

통합방법

〈신규설치통합시〉

- 교통안전시설 설치시(신호기 신설 등) 통합가능여부 판단

○ **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사업승인시 승인조건 강화**

※ 원인자 : SH공사, LH공사, 도시기반시설본부, 각구청, 일반공사업자 등

〈기존지주통합시〉

○ 노후지주(흑관) 교체시 통합가능여부 판단

○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사업승인시 승인조건 반영

통합지주 관리부서 지정

○ 통합지주 관리부서 지정 우선순위

- ① 신호등 ② 가로등 ③ 감시카메라 ④ 교통안전표지

○ **통행안전 파급효과 및 중량이 큰 시설물 순서로 주관부서 지정**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센터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센터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6	가로등 + 교통안전표지	교통운영과	구청, 도로사업소

○ **주관부서의 역할**

- 통합지주 설치에 따른 구조설계 및 예산확보
- 통합지주 파손 등 사고발생시 관리 책임
- 통합가능 지주 물량파악 후 통합 주도적 추진

○ **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의 역할**

- 통합지주 물량 파악 및 통합지주 설치·유지관리
- 소관 시설물 파손 등 사고발생시 복구 및 관리책임
- 각종 사고 발생 시 주관부서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

□ 통합지주 시설물 추진 세부사항

○ 시설물별 담당부서에서 해당 시설물 관리

- 유지관리(보수, 전기요금납부 등) : 시설물별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- 파손 및 사고발생시 :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 처리

○ 통합시설물 변경 또는 추가 설치시 : 주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

◇ 통합지주 설치공사(전기배선 등 등기구 설치)추진 : 주관 및 사업시행부서 - 소요예산은 공사비산출 결과에 따라 시설물별로 부담 ◇ 기존지주 통합시 통합대상 범위 필요 - 가로등 조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간 2~3m이내 지주 통합 ◇ 무인단속시스템(box형 카메라)의 경우 중량(50kg) 크므로 통합제외
--

○ 통합지주의 원인 불명확한 사고(전기안전사고 등)

- 공인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라 책임한계 구분

2 지주형 가로시설물별 통합화 방안

□ 신호등 중심으로 지주통합화

○ 교차로 지역 신호등 중심 통합가능지주 대상

(‘14년 5월기준)

구분	현재 지주 수					통합 시 지주 수	비고 (감소)
	계	신호등주	가로등주	표지주	기타 (CCTV 등)		
계	16,057	8,017	7,497	415	128	7,999	△8,058

※ 현재까지 통합지주 설치현황 : 672개

(신호등+가로등 343, 신호등+가로등+기타표지 319, 신호등+가로등+CCTV 9, 신호등+가로등+도로표지 1)

○ 기존지주 통합시 통합대상 및 연차별 소요예산

구분	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이후
정비대상(개)	7,999	60	120	120	120	120	7,459
예산액(억원)	1,598	12	24	24	24	24	1,490

· 산출근거 : 통합신호등(가로등) 1본 신설시(철거비 포함) 20백만원

사설안내표지판 지주통합화 및 무허가 정비

○ 통합지주 가능대상 전수조사 실시

- 대 상 : 기존 설치된 단독지주 표지판 중 통합가능 지주
※ 현재 단독지주 설치된 표지판 1,447개(허가 856개, 무허가 591개)

○ 허가 표지판은 통합가능대상을 파악하여 점용허가 갱신 시 주변지주 통합설치, 무허가 표지판은 과태료·변상금부과로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단계적으로 정비

- 설치주체별 정비방법

설치기관	정비방법
시·자치구	- 통합지주로 설치
국가 등 공공기관	- 통합지주 재설치 유도 · 대상기관에 재설치 안내문 발송 등 통합재설치 유도
민간	- 점용허가 갱신 시 허가조건으로 통합설치 - 노후·훼손 등으로 재설치할 경우 통합설치 유도

○ 자치구 통합설치시 관련부서와 협의 의무화

- 기존지주를 활용하여 통합 설치할 경우 위치, 안전성에 대한 검증필요

가로등 분전함 통합추진

○ 등주부착형 분전함 유지관리문제 보완 후 노후가로등 교체시 통합추진 예정

- 정비방법 : 자치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시 등주 부착형으로 추진
※ '14.1.~9. 기준 보도지장 가로등분전함 20개 이설, 철거

3 조례개정을 통한 통합지주 관리부서 명확화

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조례 개정

○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조례 통합지주 항목 신설 및 주관부서·유지관리부서 별표 신설

- 통합지주에 대한 항목 추가하여 설치 및 관리부서 명확화 필요

- 통합지주 관리기관의 일원화로 유지관리 효율 극대화 및 안전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, 조례에 관리방법 명시로 실효성 확보 기대

VI 행정사항

각 부서별 역할

- 신호등 중심 통합지주 설치 추진 : 교통운영과
- 사설안내표지판 통합가능지주 조사 및 정비 : 보도환경개선과
- 통합지주 관련 조례개정 추진 : 도로관리과
- 가로등분전함 통합 추진 : 도로관리과

예산확보방법

- 2015년 : 주관(시행)부서에서 예산요청시 해당시설물 담당부서 적극지원
- 시설물 별 “통합지주” 예산 2016년 신규예산 편성과 관련 예산담당관 협조요청

붙임 1. 개정 조례안

붙임 2. 각종 통합지주 현황사진 끝.

붙임1 조례개정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(안)

제2조(적용대상)

- 1.~7.(생략)
- 8. 통합지주

제3조(정의)

통합지주란

‘통합지주’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, 도로안내표지, 가로등, 교통신호등, 시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들이 동일 또는 인접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○조 (통합지주의 설치 및 관리)

- ① 도로관리청은 가로시설물 설치 시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통합지주 주관부서와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는 별표2으로 한다.

별표2

연번	통합대상	주관부서	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부서
1	차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구청
2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3	차량신호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센터
4	차량신호등 + 보행신호등 + 가로등 + CCTV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, 교통정보센터
5	보행신호등 + 가로등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6	가로등 + 교통안전표지	교통운영과	도로사업소, 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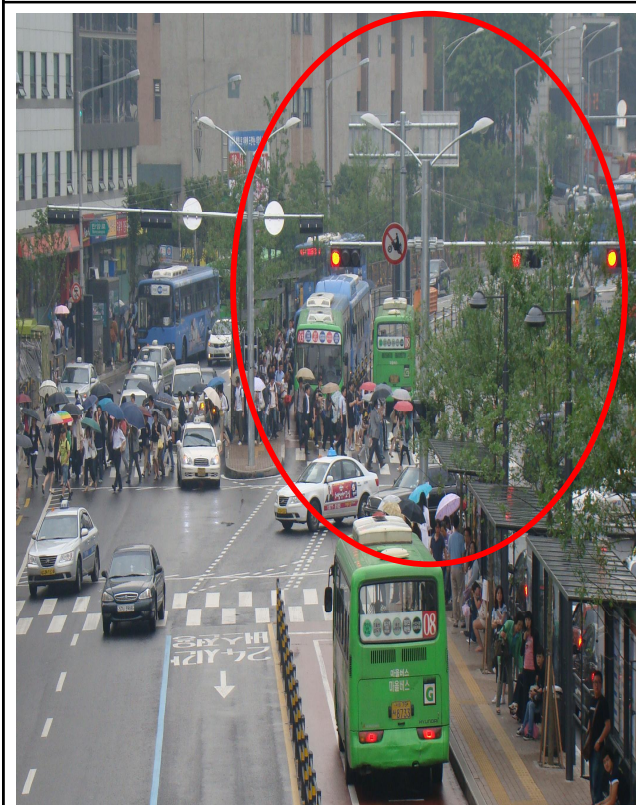
붙임 2 각종 통합지주 설치현황사진



영등포구
(차량신호등+보행신호등+가로등)



청계천
(차량신호등+보행신호등+가로등+표지)



중앙버스전용차로
(차량신호등+가로등+표지)



청계천
(차량신호등+보행신호등+가로등+표지)



가로등 + CCTV + 신호등(지주 4개)
(통합 전)



통합 후(지주 1개)



가로등분전함 통합전



가로등분전함 통합후